

# 중소기업 가업 승계 상속세 세율높아 경쟁력 약화초래 … 정부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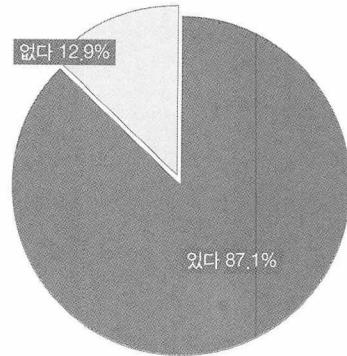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 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가업승계 의향

현재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였다. CEO 유형별로 창업자(94%), 회장은퇴 연령별로 66세 이상에서 가업승계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친족에 의한 가업승계를 선호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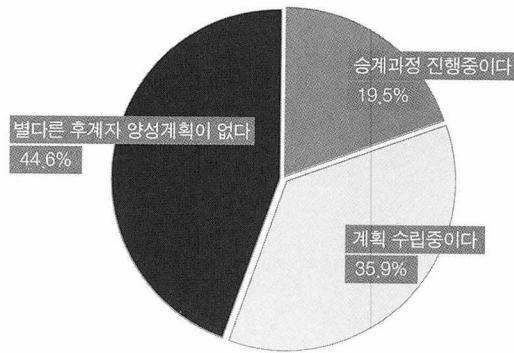
〈그림1〉 가업승계의향



## 가업승계 진행정도

현재 후계자 승계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19.5%는 현재 승계 과정 진행 중이며, 44.6%는 별다른 후계자 양성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승계를 앞둔 승계예비자의 80%가 적절한 계획이 없어 앞으로 승계관련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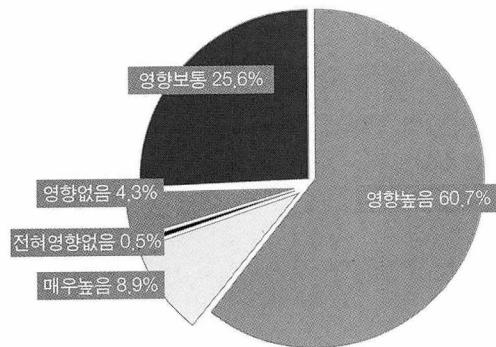
〈그림2〉 가업승계진행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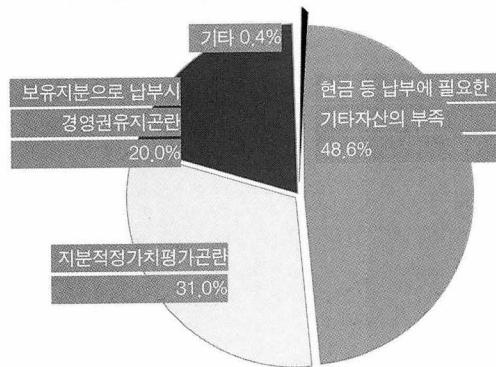
##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 영위 사업 사업수익성 약화(35.8%)라고 답

〈그림3〉 상속세 등 비용이 승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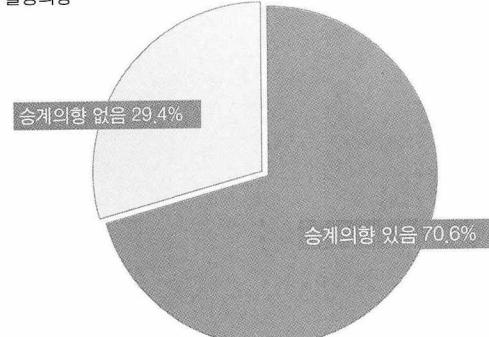
〈그림4〉 상속세 등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



〈그림5〉 기업투자를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완화제도 추진 시 활용의향



〈그림6〉 고용창출을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완화제도 추진 시 활용의향



변했다.

#### 기업승계 관련 정보 획득원

기업승계와 관련해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4.5%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승계 관련 컨설팅 기관(24.9%), 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6.5%)였다.

상속세 등 비용이 승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응답자의 69.6%(매우 높음: 8.9%+영향 높음: 60.7%)가 가업승계에 따르는 승계비용이 승계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이 가업승계 시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48.6%)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 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낮으며 (rich assets poor cash), 세금 납부를 위하여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투자를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 완화 제도 추진 시 활용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70.5%가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시 동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투자를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 완화 제도 추진 시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3%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시 동 제도를 활용했을 때 주로 41%~50% 정도의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용창출을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 완화 제도 추진 시 활용 의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6%가 고용창출을 전제로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시 동 제도를 활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고용창출을 전제로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제도 추진 시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을 전제로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과세 부담 완화 추진 시 응답자의 38.3%가 주로 10% 수준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었다.

## 주요국의 기업승계 지원제도 고찰

영국은 사업용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 완전 면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배주식 상속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액공제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0%를 공제해 준다.

독일은 10만 유로까지는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완전면제하고 있으며, 기업 전체 상속시 상속자분에 대해 특별공제를 인정(25만6천유로)하고 남은 가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또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한 특례로 상속 시 이자 없이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10씩 감면하여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토지에 대한 경감조치로 특정 소규모 택지 상속시 상속세액 평가를 최대 80% 경감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경감해 준다. 즉,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상속인이 이를 3년 이내에 발행회사에 되판 경우 의제배당과세(최고세율 50%)가 아닌 주식양도과세(세율 20%)를 적용한다.

최근 집권 자민당의 ‘사업승계문제 검토 소위원회’에서는 비상장 동족기업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승계 원활화 특례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가족회사에 대한 이익 유보금 과세

제도 폐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한 의결권 분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적격소규모 사업자산의 비과세조치 (QFOBI :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 Exemption)로서 130만달러까지 비과세다.

지난 2001년 “경제성장 및 감세조정법안 (Economic Growth &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을 통해 2010년에는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개인소득세 수준으로 인하 (2010년 최고세율 35%)하고, 수정취득가액승계 제도(Modified Carryover Basis)를 도입해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사망시점에서 자본이득 과세를 하지 않고, 무상 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기업 및 비상장기업에 대한 특례로 2000년부터 사업용 자산의 경우 50%에 대해 공제를 혜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공제요건을 완화하였고, 2005년에는 공제비율을 75%로 확대하여 적용했다. 또 상속·증여를 통한 기업양수시 납세의무 확정일로부터 5년간 분납 또는 10년간 매 6개월마다 1/20씩 분납을 혜용하고 있으며,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위해 상속과세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

## □ 주요국의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국가	공제 및 감면제도	활인평가	세율, 가산율 및 분납	기타
영국	· 사업용 자산이전에 대한 면제 · 지배주식 상속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액공제 (상장주식은 50% 공제)			
독일	· 10만 유로까지는 완전비과세 · 상속지분 특별공제 및 남은 가액에 대한 40% 추가공제		·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한 10년간 무이자 납부유예 및 매년 1/10씩 상속세 감면시행예정(10년 후 완전면제)	
일본	· 특정 사업용 토지 80% 감면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경감 · 자민당중심으로 비상장동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추진 중	· 자사주 상속가액 10% 할인 · 상속자산 50% 할인평가 (대기업은 30%)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20년간 분납 및 가산율 인하	· 상속시 과세정산제도 · 가족회사에 대한 이익유보금 과세 폐지 · 회사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보호대책수립
미국	· 사업용 자산에 대해 130만달러까지 비과세 · 2010년까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 최고세율 단계적인하 · 2010년부터 증여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수정취득가액승계제도 -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사망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에 과세
프랑스	· 2005년부터 사업용 자산의 공제 비율을 75%로 확대		· 5년 또는 10년간 매 6개월에 1/20씩 분납	